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3. 9.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9. .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청소과장)
- 제출일자: 2023. 9. 1.
- 회부일자: 2023. 9. 1.
- 검토기간: 2023. 9. 1. ~ 9. 5.(5일간)

2. 개정이유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함

3.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주민배출방법 조항 추가(안 제5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인용조례명 수정(안 제2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환경부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 12. 13.)
- 환경부 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2022. 2. 28.)

- 입법예고(2023. 8. 1. ~ 2023. 8. 21.):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결과: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조례 ·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에서는 인용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 안전 확보와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p>
<p>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대구광역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p>	<p>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p> <p>⑤ ----- <u>제4항</u>-----</p> <p>-----</p> <p>-----</p> <p>-----</p> <p>-----.</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p> <p>-----</p> <p>-----</p> <p>-----</p> <p>-----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p> <p>-----</p> <p>-----.</p>

【 관 계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 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환경부 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환경부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I. 목적

-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으로 버려지는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기본원칙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함

III. 세부 시행지침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나.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 · 운영

- 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상시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배출하도록 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0.11, 2003. 6.13, 2012. 3.30, 2015.12.31, 2017.11.2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중 제1호가목1)에 따라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11.21]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21)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8. 3]
1. 100ℓ : 25kg 이하
 2. 75ℓ : 19kg 이하
 3. 50ℓ : 13kg 이하